

휴가 및 방학 등의 구분(제34조 관련)

구분	요건	기간	제출서류	비고
특별휴가	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관련 예규에서 정한 특별 휴가의 내용에 준하되, 필요시 제한할 수 있다. ◦ 경조사휴가 - 결혼 : 본인 - 출산 : 배우자 - 사망 :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,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,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- 입양 : 본인 ◦ 여성보건휴가 ◦ 재해구호휴가	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관련 예규에서 정한 기간을 준용하되,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.	관련 증명서류 등	학생수칙 제43조에 따른 생활평가시 감점 제외
공가	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관련 예규에서 정한 공가의 내용에 준하되, 필요시 제한할 수 있다. ◦ 「병역법」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·소집·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◦ 공무에 관하여 국회·법원·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◦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◦ 승진·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◦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◦ 「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」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◦ 「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」 제32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◦ 올림픽·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◦ 천재·지변·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◦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◦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「동법률 시행령」 제8조에 의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에 참석하는 때	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관련 예규에서 정한 기간을 준용하되,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.	관련 증명서류 등	학생수칙 제43조에 따른 생활평가시 감점 제외
청원휴가 (연·병가)	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인재개발과장의 승인하에 실시	교육기간을 고려하여 별도지정	관련 증명서류	환자의 경우 의사진단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작성
공무상요양	학교 수업 또는 훈련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	수업일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.	관련 증명서류 등	학생수칙 제43조에 따른 생활평가시

				감점제외
--	--	--	--	------